

2023년 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(제13회) 시행 공고

「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소방청장

1. 시험개요

1 시험일정

가. 공고일자: 2023. 8. 18.(금) / 119고시 누리집

나. 세부일정

원서접수(필기·실기)	필기시험	필기 합격발표	실기시험	최종 합격발표
9.1.(금)~9.6.(수)	9.23.(토)	10.6.(금)	10. 23(월) ~ 11. 3(금)	11. 17.(금)
119고시	중앙소방학교 제주소방교육대	119고시	중앙소방학교	119고시

※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

가. 응시대상 : 소방공무원

나. 응시자격 :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구분	응시자격
필기시험	①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(105시간)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실기시험	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필기시험 합격한 자는 2년 내*의 기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 *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(시작일)까지로 함

II. 원서접수

1 원서접수 (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)

필기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실기시험 응시 가능

가. 접수기간: 9. 1.(금) 10:00 ~ 9. 6.(수) 18:00
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

나. 접수대상: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

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

다. 접수방법: 119고시(<http://119gosi.kr>) 접수

라. 접수확인: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(로그인 → 마이페이지)

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cm×4cm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* 등록 시 불이익 발생
 - 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허위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 조회

가. 조회기간/대상: 9. 11.(월) ~ 9. 15.(금) / 원서접수자

※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동의 절차 진행

나. 조회기관: 소방청(교육훈련담당관) 및 응시자 소속기관

다. 조회내용: 교육수료, 화재대응능력 2급 취득일, 부정행위* 등

※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치시키거나 무효로 하며,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

라. 조치사항: 응시자격을 미충족한 사람은 자격시험 불가 조치

3 응시표 출력

가. 출력일시: 9. 18.(월) 14:00 ~

나. 출력대상: 원서접수자

다. 출력방법: 119고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1 필기시험

- 가. 장소공고: 9. 18.(월) 14:00 예정 / 119고시 누리집
- 나. 시험일시: 9. 23.(토) 10:00 ~ 10:50 (50분) ※ 09:30분까지 입실 완료
- 다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, 제주소방교육대(응시인원에 따라 결정)
- 라. 시험대상: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
- 마. 준 비 물: 응시표, 신분증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)
- 바. 시험범위: 화재대응능력 1급 교범 및 문제은행 內
- 사. 시험문항: 객관식 4지 1선택형 50문항(비공개 25 + 공개* 25)
 - * 중앙소방학교 누리집 참고[정보공개 → 자료실 → 일반자료 175번 (확정)2020년 화재대응능력(1·2급 공개문제)]
 - ※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전량 회수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

2 출제문제 문의

- 가. 운영기간: 9. 23.(토) 15:00 ~ 9. 24.(일) 18:00
- 나. 문의방법: 원서접수사이트 119고시에서 신청
- 다. 자격요건: 필기시험 응시자만 가능
- 라. 문의절차: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문의서 첨부*
 - * 응시자는 화재대응능력 필기시험 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
- 마. 문의내용: 출제문제 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 문의
 - ※ 시험문제 공개 요구 또는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

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

- 가. 공고일시: 10. 6.(금) 14:00
- 나. 공고장소: 119고시
- 다. 공고내용: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일정 등
- 라. 합격기준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
 - ※ 필기시험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통보(응시번호, 이름, 소속, 연락처 등)

IV. 실기시험 (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)

※ 세부계획 별도 수립

1 실기시험 희망일 파악 (원서접수시 선택)

- 가. 신청기간: 9. 1.(금) 10:00 ~ 9. 6.(수) 18:00 (원서접수 시)
- 나. 신청방법: 119고시 접수
- 다. 신청대상: 원서접수자(희망일별 응시인원은 선착순 접수)
※ 미신청자 및 신청일 미배정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배정(확정 후 변경 불가)

2 실기시험

- 가. 시험기간: 10. 23.(월) ~ 11. 3.(금) ※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나. 시험장소: 중앙소방학교(예정)
- 다. 응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, 필기시험 면제자
- 라. 실기항목: 전문화재진압기술 7개 항목

평가분야	평가종목
전문화재진압기술	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,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,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,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, ⑦ 위험물(유류) 화재진압

- 마. 준비물품: 응시표, 신분증, 실기평가표*, 개인장비**(KFI 인증)
* 실기평가표에 응시번호, 성명, 자필 서명 기재 후 시험운영본부 제출
** 진압헬멧, 방화복(상·하), 방화두건, 방수화, 진압장갑, 인명구조경보기, 랜턴, 공기호흡기세트, 예비용기 1개 이상
- 바. 합격기준: 평가종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

V. 최종합격자 공고

- 가. 공고일시: 11. 17.(금) 14:00
- 나. 공고방법: 119고시 게시

VI. 기타 안내사항

1 일반사항

가.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▶ 인 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 - ▶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폰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- ※ 응시표 출력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지참할 것

나.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(이후 입장 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함

☑ 시험장 폐쇄시간 및 유의사항

- ▶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9:0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
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▶ 입구 기준: 자격시험기관이 지정한 출입구 기준
- ▶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
- ▶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함

다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함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
라. 모든 시험은 우천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와 일정 등을 공지함

마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

바.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

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함

라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 등

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

마.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

바.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해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

사. 시험시간 관리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

아.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할 것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함

자.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 답안으로 처리함

☑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준용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차. 시험(필기·실기)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

카.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**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함.** ※ **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타.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람

- 필기시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☎ 044-205-7287~7294
 - 실기시험: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☎ 041-840-6822
 - 인증서 발급: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☎ 044-205-7472
- <문의방법> (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 / 점심시간 제외)

【서식 1】

필기시험 문제문의서

문 제 문 의	성 명		응시번호	
연 락 처	휴 대 전 화			
	전 자 우 편			
응 시 분 야	응 시 시 도			
	응 시 분 야			
문 의 과 목	해 당 과 목			
	문 향 번 호	번	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

1. 접수자 인적사항

시 험 명		응 시 계 급	
성 명		응 시 번 호	
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
2. 정정 신청 내용

구 분	정정 전	정정 후
성 명		
주 민 등 록 번 호		

3. 정정 사유

4. 첨부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
(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)

2022년 월 일

신청자:

서명 또는 인

소방청장 귀하